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6. . .
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내 조항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의 “**폭언·폭행, 목적**”을 “**목적**”으로 함.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례 내 조항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

제9조제2항의 “**폭언·폭행,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민원을</u> ----- ----- ----- -----.</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미시 공무원직근로자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

다.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라. (생략)

3. (생략)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시설 마련)

가. 구미시 -----

나. -----

공무직근로자

다.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

(생략)

<신설>

<신설>

건 개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

건 개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민원인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전화 또
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민
원인에게 해당 사
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
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
언을 하거나 모
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권
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
복하거나 장시간
응대로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
는 등 공무 수행
을 방해하는 경우